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위탁·대행기관의 공직유관단체 지정기준 변경〉
■ 한병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930호)

2025.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2. 검토의견	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한병도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8. 1.
3. 회부연월일 : 2025. 8.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적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성이 높은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하여 그 임원의 재산을 등록 및 공개하도록 하는 등 규범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의 경우 예산 규모를 공직유관단체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 위탁 업무의 비중이 낮더라도 예산이 큰 경우에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위탁·대행 업무로 인한 수입 비중을 공직유관단체 기준에 명시하여 공직유관단체 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1항제3호).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의 위탁·대행기관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하는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위탁·대행 업무의 수입액이 해당 기관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단체로 제한하고, 지정 시 위탁·대행업무 비중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u>재정지원 규모</u> ,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① ----- ----- ----- ----- <u>재정지원 규모, 위탁·대행업무 비중,</u>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u>대행하는 기관·단체</u>	3. ----- ----- ----- ----- <u>대행하는 기관·단체 중 위탁·대행 업무의</u>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 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 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 행하는 기관·단체 5. (생략) ② (생략)	<u>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단체</u> 4. ----- ----- ----- ----- -----대행 하는 기관·단체 중 위탁·대행 업무의 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 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단체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2. 검토의견

개정안은 공직유관단체 중에서 위탁·대행기관의 지정 조건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단체로 한정하고, 공직유관단체 지정 시 고려 사항에 위탁·대행업무의 비중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유관단체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 등으로 공공성을 지닌 기관·단체로서 현행법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단체를 말하며,¹⁾

지정되는 경우 해당 기관·단체의 임원은 공직자와 같이 재산등록²⁾ 의무 등 일정 의무가 발생하게 됨.

1)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은행
2. 공기업
3.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5.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동의·추천·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

2)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12.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원

《공직유관단체 개요》

□ 취지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 등으로 공공성을 지닌 기관 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 공직자윤리법을 적용함으로써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

□ 관련 조항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 지정 기준

- 한국은행, 공기업
- 정부 지자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 임명 위촉 또는 승인 동의 추천하는 기관 단체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10억 이상 출자 출연 보조를 받는 기관 단체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수행하거나 대행하면서 예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기관 단체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 단체가 재출자 재출연한 금액이 자본금의 전액이 되는 기관 단체
-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지정 방법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지정, 인사혁신처장 고시(매 반기말)

□ 지정 현황

적용 기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기관수	1,282	1,334	1,352	1,376	1,391	1,408	1,412	1,429	1,490	-

자료: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공직유관단체 중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의 위탁·대행기관과 관련하여,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위탁·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을 해당 기관의 예산 규모(100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기관·단체로 정하고 있는 반면, 출자·출연·보조기관의 경우 지정기준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지원금액(연간 10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지정기준을 달리 하고 있음.³⁾

3)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의 범위 등)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그런데, 현행법에서 공직유관단체 지정 시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 시행령에서 위탁·대행업무에 대한 지급액이 아닌 해당 기관의 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위탁·대행업무와 공직유관기관 지정 간의 관계가 긴밀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이에 따라 위탁·대행업무의 성격이나 규모와 무관하게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대규모 기관·단체가 모두 지정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과도한 지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음.⁴⁾

현행법이 공직윤리의 확립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등록 의무, 취업제한, 행위제한 등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일종의 규제 제도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민간단체의 공직유관기관 지정은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는바,

-
1. 법 제3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기관·단체
 2. 법 제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10억원 이상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4.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중 예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
 5.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단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출자·재출연한 금액이 자본금의 전액이 되는 기관·단체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
-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를 매 반기 말까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③ 공직유관단체가 법률 또는 정관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본다.
- ④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기관·단체가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위탁기관의 경우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을 공공기관 지정 대상으로 하여 해당 기관에서의 비중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위탁·대행기관에 대한 공직유관단체 지정 기준을 변경·완화함으로써 수행하는 공공업무에 비하여 과도한 윤리 규제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불필요한 규제와 이에 따른 기관의 행정적 부담 및 갈등 발생의 가능성을 줄이고자 한 점에서 입법 취지에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음.

다만, 정부업무의 위탁금액이 해당 기관 수입의 2분의 1 미만이라도 그 업무의 성격이 공공성이 매우 높거나, 공직자윤리 측면에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직유관단체 지정이 필요하다 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사단법인의 공직유관단체 지정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예산 규모가 큰 기관·단체의 경우 공정성·청렴성 확보의 필요성에 따라 정부 대행 수입 비중이 높지 않아도 공직유관단체 지정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⁵⁾

또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법률에서 공직유관단체 개념을 준용하고 있어 공직유관단체의 지정 범위를

5) 공직유관단체 지정 및 고시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23. 11. 3. 선고 2022구합57756]

이 사건 규정은 예산 규모가 큰 기관·단체의 정부 업무 대행 과정에서 임직원의 재산상 이해나 인적 유착 등과 관련한 부정이 발생할 경우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이 클 우려가 높아 공정성·청렴성 확보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공직자윤리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며,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서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범위를 자본금,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의 규모 등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규정과의 체계적 관련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규정의 입법 경위, 원고가 수행하는 정부 대행 업무의 중요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익과의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억제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이고, 2017년부터 C이 신규 대행기관으로서 정부 대행 업무를 일부 수행하고 있는 점, 원고의 전체 수입 중 정부 검사 대행으로 인한 수입의 비중이 높지 않은 점, 원고가 「선박안전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지도·감독 등을 받고 있는 점 등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그러한 필요성이 부정되거나 퇴색하였다고 할 수 없다.

축소할 경우 타법상 의무까지 해제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⁶⁾

이는 국민 관점에서 공직윤리의 후퇴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공직유관 단체의 범주에 관한 사항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은 점들을 감안해 볼 때, 개정안에 따른 위탁·대행기관의 공직 유관단체 지정기준과 관련된 제도 변경의 장·단점과 더불어 위탁·대행 업무의 공공성, 수행 기관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인사혁신처는 위탁·대행 업무의 수입 비중을 공직유관단체 지정 기준으로 명시하는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공직유관단체 지정의 본질은 정부 업무 수행 여부에 있으므로 일정 예산 규모를 지정 기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고,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공직유관단체나 취업심사 대상기관 등 다른 규정에서도 규모(금액)를 기준으로 지정하고 있는바 위탁·대행 단체에만 수입 비중이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개정안에 따른 경우 사회적 영향력이 큰 대규모 기관·단체가 오히려 공직유관단체 지정에서 제외되어 공직윤리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문 의 처
02)6788-5342